

『구미시공설송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시 공설송조당 사용료가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어 추가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
- 향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송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용료 조정
 - 관내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60,000원 → 80,000원
 - 무연고실 : 30,000원 → 40,000원
 - 관외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120,000원 → 220,000원
 - 무연고실 : 60,000원 → 110,000원

4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등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송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관내주민 이용자의 경우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를 「60,000원」에서 「80,000원」으로,
 - 무연고실은 「30,000원」에서 「40,000원」으로 각각 인상하고
- 관외주민 이용자의 경우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는 「120,000원」에서 「220,000원」으로,
 - 무연고실은 「60,000원」에서 「110,000원」으로 각각 인상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동결 되었음
-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여부와 타 시설과의 요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